

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임 현 의원의 6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1년 2월 25일

○ 회부일자 : 2011년 3월 2일

3. 제안이유

- 민선 5기에는 도의 확고한 균형발전 의지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
-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코자 세입재원으로 “국가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”을 추가하여 안정적·지속적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,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가. 조례 용어 및 일부조문 개정 (제2조 제3호, 제6조)

- 불균형 실태조사 ⇒ “지역발전도 조사”

나. 국가 광특회계 지역발전계정 매년 지원예산의 5%이상 금액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는 조항 신설(제11조)

-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의 5퍼센트 이상 금액 중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

다.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정비(제11조, 제13조)

- “타 회계” ⇒ “다른 회계”, “기타” ⇒ “그 밖에”

“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관리·운영에 필요한”으로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-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코자 세입재원으로 “국가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”을 추가하여 안정적·지속적 지원을위한 재원을 마련하고
- 조례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
-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